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유럽인권재판소

유럽인권협약 제7조에 대한 해설서

죄형법정주의:
“법 없이는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원칙

2022년 4월 30일 개정

이 해설서는 재판소 사무국이 작성했으며 유럽인권재판소에 대해 구속력을 지니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쇄물 또는 전자 출판물의 형태로 번역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출판사나 단체는 [request to reproduce or republish a translation](#)에 연락해 승인 절차에 관한 정보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판례 해설서가 어느 언어로 번역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번역([Pending translations](#))'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해설서는 원래 프랑스어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해설서는 정기적으로 개정되며 가장 최근에는 2022년 4월 30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해설서는 편집을 위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 해설서는 <https://ks.echr.coe.int>에서 [Case-law] - [Case-law analysis] - [Case-law guides]로 들어가시면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해설서 개정 관련 정보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트위터 계정 https://twitter.com/ECHR_CEDH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번역물은 유럽평의회·유럽인권재판소의 동의를 받아 발간되었으며 이 번역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번역본 발행처(한국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 Council of Europe/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2023

목차

일러두기	4
I. 서문	5
II. 범위	6
A. “유죄판결”의 개념	6
B. “형사 범죄”의 개념	6
C. “법”의 개념	7
D. “형벌”의 개념	7
1. 일반 고려사항	7
2. 형사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별	10
3. “형벌”과 형벌 집행의 구별 필요성	11
4. 협약과 의정서의 다른 조항과의 연관성	12
III. “법 없이는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원칙	12
A. 접근가능성	13
B. 예측가능성	13
1. 일반 고려사항	13
2. 사법적 해석: 법규범의 명료화	15
3. 국가승계에 관한 특별 사례	17
4. 국가의 보편적 형사관할권과 관련 국내 법령에 관한 특별 사례	18
IV. 형법 불소급원칙	19
A. 일반 고려사항	19
B. 계속범	20
C. 재범	21
V. 더 유리한 형법의 소급 적용 원칙	21
VI. 제7조제2항: 문명국가에 의하여 승인된 법의 일반원칙	22
VII. 협약 제7조 위반 사건에서 재판소가 제시한 조치	23
인용 판례 목록	24

일러두기

이 해설서는 유럽인권재판소(이하 "재판소", "유럽재판소" 또는 "스트라스부르 재판소")가 선고한 주요 판결과 결정에 관한 정보를 법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재판소가 발간하고 있는 유럽인권협약해설서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그 시리즈 중 이 해설서는 유럽인권협약(이하 "협약" 또는 "유럽협약") 제7조에 관한 판례법을 분석하고 요약한 것입니다. 독자들은 이 해설서를 통해 이 분야의 주요 원칙들과 관련 판례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용된 판례는 리딩케이스이거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그리고 최근의 판결과 결정들 중에서 선별한 것입니다.*

재판소는 판결과 결정을 통해 제소된 개별사건에 대해 판단할 뿐만 아니라, 보다 일반적으로 협약상의 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보장하며 발전시킴으로써, 각국이 협약당사국으로서의 이행사항을 준수하도록 합니다(*Ireland v. the United Kingdom*, § 154, 1978년 1월 18일, Series A no. 25, 더 최근의 사건으로는, *Jeronovičs v. Latvia* [GC], no. 44898/10, § 109, ECHR 2016).

유럽인권협약 체제를 설립한 목적은 이처럼 공동의 이익에 관련된 공공정책의 문제들을 판단함으로써, 협약당사국들 전체의 인권보호 수준을 높이고 인권법제를 확충하는 것입니다(*Konstantin Markin v. Russia* [GC], § 89, no. 30078/06, ECHR 2012). 실제로, 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이 인권분야에서 "유럽의 공공질서에 대한 헌법적 문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해 왔습니다(*Bosphorus Hava Yolları Turizm ve Ticaret Anonim Şirketi v. Ireland* [GC], no. 45036/98, § 156, ECHR 2005VI, 더 최근의 사건으로는, *N.D. and N.T. v. Spain* [GC], nos. 8675/15 및 8697/15, § 110, 2020년 2월 13일).

이 해설서는 협약의 해당 조항과 그에 관한 추가 의정서 조항들에 대해 주제어들을 표시해 두고 있습니다. 각 사건에서 다루진 법적 쟁점은 유럽인권협약과 그 의정서 본문에서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추출한 색인으로부터 선별한 주제어목록(*List of keywords*)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 판례가 수록된 HUDOC 데이터베이스(*HUDOC database*)는 주제어를 통한 검색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주제어검색을 이용하면 유사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판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해당 사건에서의 논증과 결론이 주제어를 통해 요약되어 있음). 개별 사건의 주제어는 HUDOC에서 사건세부정보(*Case Details*) 태그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UDOC 데이터베이스 및 주제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UDOC 사용자 설명서(*HUDOC user manua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용된 판례는 재판소와 유럽인권위원회(European Commission of Human Rights)의 공식 언어(영어 및 프랑스어) 중 하나 또는 두 언어 모두로 작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모든 인용문은 소재판부(Chamber)가 선고한 본안판결(judgment on the merits)에 대한 것입니다. 약칭 "(dec.)"은 재판소의 결정(decision)에서 인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GC]"는 해당 사건이 대재판부(Grand Chamber)에서 심리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지만 이 개정판 발간 당시 최종적인 것이 아닌 때에는 별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I. 서문

협약 제7조 - 죄형법정주의

“1. 어느 누구도 행위 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형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형사상 유죄가 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형사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도 중한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2. 이 조는 그 행위 시 문명국가에 의하여 승인된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범죄에 해당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당해인을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HUDOC 키워드

법 없이는 범죄가 없다(*Nullum crimen sine lege*) (7-1) - 법 없이는 형벌이 없다(*Nulla poena sine lege*) (7-1) - 유죄판결 (7-1) - 더 중한 형벌 (7-1) - 형사 범죄 (7-1) - 작위 또는 부작위 시 (7-1) - 소급 (7-1) - 형사 범죄 (7-2) - 문명국가에 의하여 승인된 법의 일반원칙 (7-2)

1. 법치주의의 필수 요소인 제7조에 명시된 보장은 전쟁 또는 기타 공공 비상사태 시 제15조에 따라 제7조의 권리축소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강조되는 바와 같이 협약의 보호 체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제7조는 자의적인 기소, 유죄판결, 처벌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7조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S.W. v. the United Kingdom*, § 34; *C.R. v. the United Kingdom*, § 32; *Del Río Prada v. Spain* [GC], § 77; *Vasiliauskas v. Lithuania* [GC], § 153).

2. 협약 제7조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형법의 소급적용을 금지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또한 제7조는 더 일반적인 원칙인 “법 없이는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는 원칙과 형법이 유추 등에 의해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광범위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ibid.*, § 154; *Kokkinakis v. Greece*, § 52).

II. 범위

A. “유죄판결”의 개념

3. 제7조는 피고인이 형사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제7조는 예컨대 단순히 재판이 진행 중인 기소(*Lukanov v. Bulgaria*, 위원회 결정) 또는 범죄인 인도 결정(*X v. the Netherlands*, 위원회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협약의 목적상, 범죄가 성립되었다는 점이 법에 따라 확립되지 않는 한 “유죄판결”은 있을 수 없다(*Varvara v. Italy*, § 69).

4. “형벌”과 “처벌”의 근거 및 “유죄”의 개념, 그에 상응하는 “처벌할 수 있는 사람 *personne coupable*”(프랑스어본)의 개념은 처벌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형사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고 범죄 가해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내 법원에서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제7조의 해석을 뒷받침한다(*Varvara v. Italy*, § 71; 또한 범죄자의 범의(*mens rea*)에 대한 요건과 관련하여, *Sud Fondi srl and Others v. Italy*, § 116 및 *G.I.E.M. S.R.L. and Others v. Italy* (본안) [GC], §§ 241-242 및 246 참조).

5. *G.I.E.M. S.R.L. and Others v. Italy* (본안) [GC] (§ 251) 사건의 판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7조는 개인의 형사책임을 사전에 성립되고 선고되지 않는 한 형사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필수적인 형사책임 성립이 피고인이 유죄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형사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확립되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ibid.*, § 252). 그런 점에서, 제7조의 적용은 엄밀한 의미에서 형법에 속하도록 분류되지 않은 절차를 국가가 재량권 행사를 통해 “범죄화”하는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ibid.*, § 253). 그러므로 *G.I.E.M. S.R.L. and Others v. Italy* (본안) [GC] 사건에서, 재판소는 엄격한 의미에서의(*stricto sensu*) 형사절차의 필요성을 배제한 후, 형벌이 부과되기 전에 적어도 공식적인 형사책임 선고가 내려졌는지 고려했다. 청구인 중 한 명은 불법 토지개발로 기소되었지만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법으로 개발된 토지는 전부 몰수되었다. 재판소는 공소시효 만료를 유일한 이유로 절차가 중단되긴 했지만, 국내 법원이 불법토지개발죄의 모든 범죄구성요건이 성립되었다고 언급한 점을 근거로 제7조의 목적상 “유죄판결”이 내려졌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청구인의 사건에서 제7조가 위반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ibid.*, §§ 258-261). 청구인 기업(이사나 주주의 법인격과 구별되는 법인격을 가진 법인)은 기소되지 않았고 형사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한, 이들 기업은 형사책임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었으므로, 재산 몰수는 제7조와 양립할 수 없었다(*ibid.*, §§ 257 및 265-274).

B. “형사 범죄”의 개념

6. “형사 범죄”의 개념(프랑스어본의 “*infraction*”)은 협약 제6조¹의 “형사소추”와 마찬가지로 같이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다. 어떤 범죄 혐의가 제6조에서 의미하는 “형사” 영역에 속하는지 심사하기 위한 *Engel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 82) 판례(*Jussila v. Finland* [GC], § 30에서 재확인됨)의 다음 세 가지 기준이 제7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Brown v. the United Kingdom* (dec.); *Société Oxygène Plus v. France* (dec.), § 43; *Žaja v. Croatia*, § 86):

- 국내법의 분류
- 범죄의 본질적인 성격(가장 중요한 기준 *Jussila v. Finland* [GC], § 38 참조)
- 당사자에게 부과될 위험이 있는 형벌의 강도

1. 제6조(형사 영역)의 범위와 “형사소추”의 개념에 관해서는 재판소 웹사이트(www.echr.coe.int – 판례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6조\(형사 영역\)에 대한 해설서](#) 참조.

7.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재판소는 군을 위반이 제6조 또는 제7조의 목적상 “형사”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Çelikateş and Others v. Turkey* (dec.)). 이는 전 KGB 요원의 해고 및 고용 제한(*Sidabras and Džiautas v. Lithuania* (dec.)), 대학 구내에서의 학생의 교칙 위반(*Monaco v. Italy* (dec.), §§ 40 및 68-69) 중대한 헌법 위반에 근거한 국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Paksas v. Lithuania* [GC], §§ 64- 69)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형사 범죄”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인 경우, 재판소는 청구가 청구인이 제소 근거로 제시한 협약 조항의 물질 관할권(*ratione materiae*)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C. “법”의 개념

8. 제7조에 언급된 “법”(프랑스어본의 “*droit*”)의 개념은 국내 법령과 판례법을 포괄하는 다른 협약 조항에 명시된 것과 일치하며, 특히 접근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비롯한 질적 요건으로 구성된다(*Del Río Prada v. Spain* [GC], § 91; *S.W. v. the United Kingdom*, § 35). “법”은 사법적 입법(*ibid.*, §§ 36 및 41-43; *Norman v. the United Kingdom*, § 62-66, 커먼로 위반에 관한 사건)뿐만 아니라 법령 및 법령보다 낮은 지위를 가진 제정법(교도소 규칙, *Kafkaris v. Cyprus* [GC], §§ 145-146) 및 불문의 관습헌법 또한 분명히 포함한다(범죄의 정의에 “포괄적인 참조” 또는 “참조에 의한 입법” 방법의 사용과 범죄행위 당시 시행 중인 형법과 개정된 형법 간의 비교 기준에 관한 권고적 의견, [GC], § 69). 제7조는 법령에서 형사 범죄에 대한 근거 조문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Norman v. the United Kingdom*, § 62). 재판소는 국내법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건의 중요한 시기에 국내법이 적용된 방식 또한 고려해야 한다(*Kafkaris v. Cyprus*, § 145; *Del Río Prada v. Spain* [GC], § 90).

9. 반면, 시행 중인 성문법 규칙과 양립하지 않으며 근거로 삼아야 하는 법령의 실체적 내용을 무시하는 국가 관행은 제7조에서 의미하는 “법”으로 간주할 수 없다(자체 법체계와 기본권을 명백히 위반한 동독의 국경 통제 관행에 관해서는 *Streletz, Kessler and Krenz v. Germany* [GC], §§ 67-87 참조; 또한 구 체코슬로바키아의 법률과 헌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수행된 재판에서 사형을 부과하여 공산주의 체제의 반대자들을 숙청한 관행에 관해서는 *Polednová v. the Czech Republic* (dec.) 참조).

10. 제7조제1항에 명시된 “국제법”의 개념은 해당국이 비준한 국제조약(*Streletz, Kessler and Krenz v. Germany* [GC], §§ 90-106) 및 국제관습법(국제법과 전쟁 관습법에 관해서는 *Kononov v. Latvia* [GC], §§ 186, 213, 227, 237 및 244 참조; “인도에 반한 죄”의 개념에 관해서는 *Korbely v. Hungary* [GC], §§ 78-85 참조; 그리고 “집단학살”의 개념에 관해서는 *Vasiliauskas v. Lithuania* [GC], §§ 171-175 및 178 참조)을 의미하며, 이에 상응하는 법이 국내법으로 공포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Kononov v. Latvia* [GC], § 237).

D. “형벌”의 개념

1. 일반 고려사항

11. 협약 제7조제1항에 명시된 “형벌”의 개념 또한 *G.I.E.M. S.R.L. and Others v. Italy* (본안) [GC] (§ 210) 판례의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 제7조에 따른 보호의 실효성을 보장하려면 재판소가 겉으로 드러난 사항 외에도 특정 조치가 실질적으로 제7조제1항에서 의미하는 “형벌”에 해당하는지 독자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형벌”의 존재 여부에 대한 평가의 출발점은 문제의 조치가 “형사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에 따라 내려졌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은 여러 관련 기준 중 하나에 불과하다. 형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제7조에서 의미하는 “형벌”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G.I.E.M. S.R.L. and Others v. Italy* (본안) [GC], §§ 215-219).

12. “형벌의” 존재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다른 요인으로는 해당 조치의 성격과 목적(특히 징벌적 목적), 국내법에 따른 분류, 형벌의 채택 및 집행과 관련된 절차 및 형벌의 강도를 들 수 있다(*G.I.E.M. S.R.L. and Others v. Italy* (본안) [GC], §§ 211; *Welch v. the United Kingdom*, § 28; *Del Río Prada v. Spain* [GC], § 82; *Galan v. Italy* (dec.), §§ 70 및 85-96). 그러나 예방적 성격의 많은 비형사적 조치들이 당사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치의 강도가 그 자체로 결정적이지는 않다(*Del Río Prada v. Spain* [GC], § 82 <http://hudoc.echr.coe.int/eng/?i=001-127697>; *Van der Velden v. the Netherlands* (dec.)).

13. 문제가 된 조치의 구체적인 집행 조건은 해당 조치의 성격과 목적 및 그 강도와 특히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제7조제1항의 목적상 해당 조치가 형벌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평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Ilmseher v. Germany* [GC], § 204). 일부 경우, 특히 국내법에서 형벌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의 경우, 해당 조치에 대한 상당한 변경, 특히 집행 조건의 상당한 변경은 이 조치가 제7조에서 의미하는 형벌에 해당한다는 원래의 결정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조치가 동일한 구금 명령에 따라 시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ibid.*, § 206). 재판소는 어떤 조치가 실질적으로 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 중 일부는 “정적”이고(예: 문제의 조치가 형사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에 따라 부과되었는지에 관한 기준), 일부는 “동적”이라고 밝혔다(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당 조치의 성격과 목적 및 강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ibid.*, § 208).

14.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재판소는 특히 다음 조치가 “형벌”에 해당한다고 정확히 지적했다.

- 유죄판결이 내려진 후 범죄 수익에 대한 예방적, 보상적 성격과 더불어 징벌적 목적을 고려하여 내린 몰수 명령(*Welch v. the United Kingdom*, §§ 29-35, 판사가 몰수할 금액을 정할 때 피고인의 책임 정도를 고려할 수 있고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을 수 있는 마약 밀매수익 몰수에 관한 사건)
- 파산 상태를 입증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 강제징수 절차에 따른 집행을 적용하여 벌금 징수를 보장하고 벌금을 완전히 납부하지 않을 시 노역장 유치명령을 내리도록 한 것과 관련된 조치(*Jamil v. France*, § 32)
- 도시개발 관련 사건에서 예방적, 징벌적 목적으로 해당 불법 건축물 가치의 100%에 상응하는 금액이 부과된 과태료(*Valico SLR v. Italy* (dec.)) 및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시장조작에 부과된 과태료(*Georgouleas and Nestoras v. Greece*, §§ 33-43)
- 무죄판결에 따라 형사법원이 불법 건축을 근거로 명령한 토지몰수 조치(법 위반의 재발 방지를 위한 징벌적 목적이 주된 목적이며, 따라서 예방적, 징벌적 조치를 구성함)(*Sud Fondi srl and Others v. Italy* (dec.); *Varvara v. Italy*, §§ 22 및 51) 및 공소시효 만료 또는 해당 형사절차와 관련성 없음을 이유로 절차 중단 결정이 내려진 후 형사법원이 불법 토지개발을 근거로 명령한 토지몰수 조치(*G.I.E.M. S.R.L. and Others v. Italy* (본안) [GC], §§ 212-233)
- 중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에 따라 사실심 법원이 그 예방적, 징벌적 성격 및 일반 교도소에서의 집행방식, 기한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명령한 예방적 구금(*M. v. Germany*, §§ 123-133; *Jendrowiak v. Germany*, § 47; *Glien v. Germany*, §§ 120-130; 이와 반대로, 전문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청구인에게 내려진 예방적 구금 명령과 관련하여 *Bergmann v. Germany*, §§ 153-182 참조)

- 징역형을 추방 및 10년 입국 금지 명령으로 대체(*Gurguchiani v. Spain*, § 40)
- 사실심 법원이 2차적 형벌로 명령한 영구적인 직업 금지(*Gouarré Patte v. Andorra*, § 30)

15. 반대로, 다음 조치는 “형벌”의 개념에서 제외된다.

- 형사책임이 없는 자에게 부과된 예방적 조치(강제 입원 포함(*Berland v. France*, §§ 39-47))
- 중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에 따라 사실심 법원이 명령한 예방적 구금. 재소자의 정신장애 치료를 위한 새로운 법체계(특히 일반 교도소가 아닌 특수시설)가 도입됨에 따라 구금 조치의 집행조건이 과거와 크게 달라지면서 이제는 형벌에 해당하지 않게 됨(*Ilmseher v. Germany* [GC], §§ 210-236)
- 예방적, 억제적 목적으로 경찰 또는 사법부의 성범죄자 목록이나 폭력범죄자 목록에 관련자 등재(*Adamson v. the United Kingdom* (dec); *Gardel v. France*, §§ 39-47)
-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DNA를 수집, 분석하는 국가기관의 조치(*Van der Velden v. the Netherlands* (dec.))
- 개인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예방적 성격의 구금(*Lawless v. Ireland (no. 3)*, § 19)
- 형사상 유죄판결에 따라 징역형 외에 추가로 부과된 체류 금지 조치(공공질서를 위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함)(*Renna v. France*, 위원회 결정; 제6조제1항의 형사 규정 준용과 관련하여 *Maaouia v. France* [GC], § 39 참조)
- 행정추방명령 또는 체류금지(*Vikulov and Others v. Latvia* (dec.); *C.G. and Others v. Bulgaria* (dec.))
- 유럽평의회 수형자 이송협약(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추가의정서에 따라 수형자를 다른 국가로 이송한 조치(수형자가 출신 국가로 재사회화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Szabó v. Sweden* (dec.); *Giza v. Poland* (dec.), § 30, 유럽체포영장에 관한 EU 기본결정(EU Framework Decision on the European Arrest Warrant) 및 회원국 간 인도 절차에 따른 수형자 인도와 관련된 사건)
- 마피아형 조직에 소속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에 근거한 조치로, 형사상 유죄판결이 이미 확정되었을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은 예방적 재산몰수 명령(*M. v. Italy*, 위원회 결정)
- 형사 범죄 실행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인물에 대한 특별경찰 감시 또는 가택 구금(*Mucci v. Italy*, 위원회 결정; *Raimondo v. Italy*, § 43, 제6조제1항의 형사 측면과 관련된 사건)
-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출소한 후 예방적 목적을 위한 행정 감시 및 이동의 자유에 대한 후속 제한과 보고 의무 적용(*Timofeyev and Postupkin v. Russia*, §§ 70-82)
- 제3자에 대한 형사절차와 관련해 부과된 몰수 명령(*Yildirim v. Italy* (dec.); *Bowler International Unit v. France*, §§ 65-68)
-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청구인에 대한 형사절차 종료 시 막바지에 부과된 불법 축적 재산에 대한 몰수 명령(*Balsamo v. San Marino*, §§ 60-65)

- 유죄판결에 따라 별도의 절차로 결정되며, 민사상 대물 몰수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범죄수익 재산의 몰수(*Ulemek v. Serbia* (dec.), §§ 46-57)
- 정당 해산 후 의원직 박탈 및 자격상실 선고(*Sobacı v. Turkey* (dec.))
- 부패에 대한 형사상 유죄판결 확정으로 피선거권 상실 및 당선무효(의회)(*Galan v. Italy* (dec.), §§ 70-97)
-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제기된 탄핵심판절차에서 내려진 대통령 탄핵 및 파면 선고(*Paksas v. Lithuania* [GC], §§ 65-68)
- 징계 절차에 따른 공무원연금 수급권 정지(*Haioun v. France* (dec.))
- 3주간의 독방 감금(*A. v. Spain*, 위원회 결정; *Payet v. France*, §§ 94-100, 제6조의 형사 측면에 따라 결정된 사건)
- 청구인이 교도소의 유일한 수감자라는 사실에 따른 재소자의 사회적 격리. 재판소는 이 조치가 너무나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러한 상황에 적용될 제도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함(*Öcalan v. Turkey* (no. 2), § 187)
- 조세 우대 조치 취소에 따른 세금 재산정(청구인 기업에 형벌이 부과되지 않음)(*Société Oxygène Plus v. France* (dec.), §§ 40-51)
- 도산절차의 청산인에 대한 면허 취소(*Rola v. Slovenia*, §§ 60-66)
- 프로스포츠의 출장정지 징계(*Platini v. Switzerland* (dec.), §§ 44- 49)

2. 형사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별

16. 재판소는 협약 제7조에 명시된 소급에 관한 규칙이 범죄와 해당 범죄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는 조항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소급에 관한 규칙은 재판소가 행위 시의 법률(*tempus regit actum*) 원칙에 따라 즉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절차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Scoppola v. Italy* (no. 2) [GC], § 110, 협약 제6조 관련 사건에 대한 참조 포함: 예를 들어, “절차 규칙”으로 지칭된 증인 진술서 사용에 관한 규칙과 관련하여, *Bosti v. Italy* (dec.), § 55 참조). 단, 이 원칙은 자의성이 없음을 전제로 한다(*Morabito v. Italy* (dec.)). 그러나 국내법에서 절차법으로 분류된 조항이 부과될 형벌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판소는 해당 조항을 제7조제1항의 마지막 문장이 적용되는 “형사 실체법”으로 분류한다(*Scoppola v. Italy* (no. 2) [GC], §§ 110-113, 약식절차에서 부과할 수 있는 형벌의 강도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관한 사건).

17. 특히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을 진행 중인 절차에 즉시 적용하더라도 제7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Coëme and Others v. Belgium*, § 149). 재판소는 공소시효에 관한 규칙이 범죄와 형벌을 정의하지 않으며 사건 심사를 위한 단순한 전제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한 이를 절차 규칙으로 본다(*Previti v. Italy* (dec.), §§ 80-85; *Borcea v. Romania* (dec.), § 64; *Orlen Lietuva Ltd. v. Lithuania*, § 97). 그러나 재판소는 제7조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 후 다시 기소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판단했다(*Antia and Khupenia v. Georgia*, §§ 38-43; *실질적으로 고문 행위를 구성하는 범죄에 대한 기소, 유죄판결, 처벌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에 관한 권고적 의견* [GC], § 77). 또한, 유죄판결이 내려진 범죄가 국제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인 경우, 공소시효 적용 문제는 사건의 중요한 시기에 시행 중이던 관련 국제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Kononov v. Latvia* [GC], §§ 229-233, 재판소가 사건의 중요한 시기에 시행 중이던 관련 국제법에 전쟁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절차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판결한 사건; 재판소가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건인 *Kolk and Kislyiy v. Estonia*

(dec.) 및 *Penart v. Estonia* (dec.) 비교).

3. “형벌”과 형벌 집행의 구별 필요성

18. 재판소는 “형벌”을 구성하는 조치와 해당 형벌의 “집행” 또는 “시행”과 관련된 조치를 구별한다. 해당 조치의 성격과 목적이 형의 감면에 관한 경우 혹은 조건부 석방 절차의 변경에 관한 경우, 해당 조치는 제7조에서 의미하는 “처벌”의 필수 요소를 구성하지 않는다(감형 승인과 관련하여, *Grava v. Italy*, § 49; 및 *Kafkaris v. Cyprus* [GC], § 151 참조; 가석방 조건에 대한 입법 개정과 관련하여 *Hogben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및 *Uttley v. the United Kingdom* (dec.) 참조; 다양한 수형자 이송 사건에서의 가석방 규정 간 차이에 관해서는 *Ciok v. Poland* (dec.), §§ 33-34 참조). 석방 정책, 시행 방식 및 배경 논리와 관련된 문제는 회원국이 자체 형사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에 속하는 사안이다(*Kafkaris v. Cyprus* [GC], § 151). 이미 최종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해 사면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 또한 제7조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안이다(*Montcornet de Caumont v. France* (dec.)).

19. 그러나 현실에서 “형벌”을 구성하는 조치와 형벌 “집행”과 관련된 조치가 항상 명확히 구별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재판소는 문제되는 형벌에 대해서 형 집행 방법에 관한 일련의 교도소 규정을 특정 방식으로 해석하고 시행한 조치가 단순한 형벌 집행을 넘어 실제 형량의 범위를 다뤘다는 점을 인정했다(*Kafkaris v. Cyprus* [GC], § 148, 종신형에 관한 사건). 마찬가지로, 청구인이 범죄를 저지른 후 발효된 법령에 따른 형 집행 법원의 예방적 구금 연장은 “가중처벌”에 해당하며, 따라서 형벌의 집행에만 국한되지 않는다(*M. v. Germany*, § 135).

20.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제7조제1항의 두 번째 문장에서 언급된 “받지”라는 용어가 형 선고 이후 도입된 모든 조치를 해당 조항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Del Río Prada v. Spain* [GC], § 88). 따라서,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 또는 복역 중 입법부, 행정기관 또는 법원에서 시행한 조치가 사실심 법원에 의해 부과된 “형벌”의 범위를 재정의하거나 수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이러한 조치는 협약 제7조제1항에 간략히 명시된 형벌불소급 원칙의 범위에 속한다(*ibid.*, § 89). 형 집행기간 중 시행된 조치가 형의 집행방식에만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그 범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판단하려면, 재판소는 각 사건에서 실제로 부과된 “형벌”이 사건과 중요한 관련이 있는 기간에 시행 중이던 국내법에 따라 부과된 것인지, 즉 해당 형벌의 고유한 성격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ibid.*, §§ 109-110 및 117, 판례법 변경에 따라 구금 중의 노역에 대한 감형이 징역 30년형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게 된 사건). 또한 다른 사실심 법원에서 병과된 양형 선고가 하나의 합산된 양형으로 병합된 사건 또한 참조하라(*Koprivnikar v. Slovenia*, §§ 50-52; 또한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마친 형기의 합산 요청을 포함한 합산 양형과 관련된 최대 복역 기간에 관해서는 *Arrozpide Sarasola and Others v. Spain*, §§ 122-123 참조).

4. 협약과 의정서의 다른 조항과의 연관성

21. 제6조제1항의 형사적 측면과 “형사 소추” 개념 사이에 분명한 연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위 6항 참조; *Bowler International Unit*, §§ 66-67; *Pantolon v. Croatia*, § 28; *Galan v. Italy* (dec.), § 71), 협약 제7조의 목적상 “형벌”로 분류되었는지 여부는 제7의정서 제4조에 명시된 일사부재리(*non bis in idem*) 원칙의 적용가능성 판단과 관련이 있다(*Sergueï Zolotukhin v. Russia* [GC], §§ 52-57, 형사절차”의 개념에 관한 사건; *Timofeyev and Postupkin v. Russia*, § 86). “형벌”을 구성하는 요소의 개념이 협약 조항마다 달라서는 안 된다(*Göktan v. France*, § 48).

22. 이미 문제의 절차가 제6조에서 의미하는 “형사 소추”의 결정을 수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경우, 재판소는 종합적으로 고려한 협약 해석의 일관성을 위해 문제의 조치가 제6조에서 의미하는 “형벌”로 간주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예를 들어, *Gestur Jónsson and Ragnar Halldór Hall v. Iceland* [GC], § 112 참조; 제7조 부적용에 대한 이전의 결론에 따라 제6조 형사 규정의 부적용을 결정한 유사한 접근법에 관해서는 *Timofeyev and Postupkin v. Russia*, § 92 참조).

III. “법 없이는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원칙

23. 협약 제7조는 형을 선고하거나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재판소는 피고인이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행위를 한 시점에 해당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이 시행되고 있었고, 피고인이 받은 처벌이 해당 조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Coëme and Others v. Belgium*, § 145; *Del Río Prada v. Spain* [GC], § 80).

24. 협약체계의 보충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국내 법원의 잘못으로 주장되는 사실 또는 법률의 오류가 협약에서 보호하는 권리와 자유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은 한(*Streletz, Kessler and Krenz v. Germany* [GC], § 49; *Vasiliauskas v. Lithuania* [GC], § 160), 그리고 국내 법원에서 수행한 평가가 명백히 자의적이지 않은 한(*Kononov v. Latvia* [GC], § 189) 이러한 오류를 시정하는 것은 재판소의 소관이 아니다. 재판소가 범죄 또는 청구인의 개별 형사책임에 대한 법적 분류에 대한 판결을 요청받지 않았더라도, 이 문제는 국내 법원이 1차적으로 평가하는 사안에 속하고(*ibid.*, § 187; *Rohlena v. the Czech Republic* [GC], § 51), 제7조제1항은 재판소가 청구인의 유죄판결이 해당 행위 시 시행 중인 법적 근거에 따라 내려졌는지 심사할 것을 요구하며, 특히 관련 국내 법원이 내린 결론이 협약 제7조와 양립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스스로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재판소의 검토 권한을 축소할 경우 제7조의 목적을 상실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ibid.*, § 52; *Kononov v. Latvia* [GC], § 198; *Vasiliauskas v. Lithuania* [GC], § 161).

25. 그 밖에도, 적법성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내려진 범죄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 중한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재판소는 국내 법원이 양형 판단 시 오류를 범한 사건에서 국내 법원이 평가한 감경사유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형벌을 고려한 후 제7조 위반 판결을 내릴 수 있다(*Gabbari Moreno v. Spain*, §§ 22-34). 유추에 의한 형벌 부과 또한 제7조에 명시된 법 없이는 형벌이 없다는 원칙(“*nulla poena sine lege*”)에 위배될 수 있다(*Başkaya and Okçuoğlu v. Turkey* [GC], §§ 42-43, 편집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에 따라 발행인에게 징역형을 부과한 것과 관련된 사건).

26. 적법성 원칙은 범죄와 해당 범죄에 대한 형벌이 법에 따라 명확히 정의될 것을 요구한다(“법”의 개념에 관한 위 7~9항 참조). 다른 협약 조항(예: 제8조~제11조)에서와 마찬가지로 제7조에서 의미하는 “법”의 개념은 특히 접근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포함한 질적 요건으로 구성된다(*G.I.E.M. S.R.L. and Others v. Italy* (본안) [GC], §§ 242; *Cantoni v. France*, § 29; *Kafkaris v. Cyprus* [GC], § 140; *Del Río Prada v. Spain* [GC], § 91; *Perinçek v. Switzerland* [GC], § 134). 이러한 질적 요건은 범죄의 정의(*Jorgic v. Germany*, §§ 103-114) 및 해당 범죄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형벌 또는 그 범위에 대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Kafkaris v. Cyprus* [GC], § 150; *Camilleri v. Malta*, §§ 39-45, 해당 양형기준의 예측가능성에 관한 사건으로 사실심 법원이 법에서 정한 양형기준이 아니라 검찰이 주장한 양형기준에 따라 판결한 사건; *Porsenna v. Malta* (dec.), §§ 25-30, 적용 가능한 형벌의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에서 검찰의 결정이 사실심 법원에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다는 취지의 *Camilleri* 판결에 따라 도입된 입법 개정과 관련된 사건). 범죄의 정의와 적용 가능한 형벌과 관련된 “법의 질적 수준”의 불충분성은 협약 제7조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Kafkaris v. Cyprus* [GC], §§ 150 및 152).

A. 접근가능성

27. 접근가능성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문제의 유죄판결에서 근거로 제시된 “형법”이 청구인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었던 법이었는지, 즉 공개된 형법인지 여부를 확인한다(법 조항을 해석한 국내 판례법의 접근가능성에 관해 *Kokkinakis v. Greece*, § 40 및 *G. v. France*, § 25 참조; “행정명령” 접근가능성에 관해 *Custers, Deveaux and Turk v. Denmark* (dec.), § 82 참조). 유죄판결이 피청구국에 의해 비준된 국제조약에만 근거하여 내려진 경우, 재판소는 해당 조약이 국내법에 통합되었는지 여부와 공식 간행물에 게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제네바 협약에 관해 *Korbely v. Hungary* [GC], §§ 74-75 참조). 재판소는 또한 적용 가능한 국제관습법에 비추어 쟁점이 된 범죄의 정의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1948년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Genocide)이 발효되기 전에 집단학살을 규탄하는 유엔총회의 결의에 관해 *Vasiliauskas v. Lithuania* [GC], §§ 167-168 참조; 공식 간행물에 수록되지 않은 국제법과 전쟁 관습법에 따라 전쟁범죄의 정의에 대한 접근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건에 관해서는 *Kononov v. Latvia* [GC], §§ 234-239 및 244 참조).

B. 예측가능성

1. 일반 고려사항

28. 필요한 경우 법원의 해석과 적절한 법률 자문을 통해, 개인이 관련 조항의 문구로부터 어떤 작위 및/또는 부작위가 자신에게 형사책임을 유발하는지 및 해당 작위 및/또는 부작위에 대해 어떤 처벌이 부과될 것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Cantoni v. France*, § 29; *Kafkaris v. Cyprus* [GC], § 140; *Del Río Prada v. Spain* [GC], § 79). “적절한 자문”의 개념은 법적 자문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Chauvy and Others v. France* (dec.); *Jorgic v. Germany*, § 113).

29. 원칙적으로 범죄 가해자의 개인적 책임 요소가 성립된 경우에만 제7조에서 의미하는 “형벌”이 존재할 수 있다. 형법 조항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정도와 범죄자의 개인적 책임 사이에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제7조는 형벌을 부과하려면 실제 범죄 가해자의 행위에 책임 요소가 있음을 드러내는 정신적 연결고리, 즉 범의를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G.I.E.M. S.R.L. and Others v. Italy* (본안) [GC], §§ 242 및 246). 그러나 협약, 특히 제6조제2항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책임 추정에 기인하는 특정 형태의 객관적 책임이 있을 수 있다(*ibid.*, § 243).

30. 법령의 일반성으로 인해, 법령의 표현이 절대적으로 정확할 수는 없다. 과도한 경직성을 피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많은 법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소 모호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제정법의 해석과 적용은 실제 관행에 달려있다(*Kokkinakis v. Greece*, § 40, “개종전도” 범죄의 정의와 관련된 사건; *Cantoni v. France*, § 31, “의약품”의 법적 정의와 관련된 사건). 분류의 입법기술이 사용될 때, 정의의 주변부에는 그 경계가 모호한 회색지대가 흔히 존재한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조항의 내용이 충분히 명확하다는 점이 입증되는 한, 경계선상의 사실 문제와 관련된 이 의심스러운 주변부 상황 그 자체로 해당 조항 자체가 제7조와 양립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ibid.*, § 32). 반면, 법령 조항을 해석할 때 지나치게 모호한 개념과 기준을 사용한다면, 해당 조항 자체가 그 효과에 대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의 요건과 양립할 수 없을 것이다(*Liivik v. Estonia*, §§ 96-104). (EU 지침의 국내법 전환 등의 결과로) 입법자가 더 자세한 형태로 법을 개정했다는 사실이 꼭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행위가 처벌받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Georgouleas and Nestoras v. Greece*, § 66).

31. 작위나 부작위를 범죄로 정의하기 위해 “포괄적 참조” 또는 “참조에 의한 입법” 방법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제7조의 요건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조항을 언급하는 참조 조항과 이 조항에 의해 참조된 조항을 함께 해석했을 때, 필요한 경우 적절한 법률 자문의 도움을 통해 관련 당사자가 어떤 행위가 자신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범죄 정의에서의 “포괄적 참조” 또는 “참조에 의한 입법” 방법의 사용과 범죄행위 당시 시행 중인 형법과 개정된 형법 간의 비교 기준에 관한 권고적 의견 [GC]*; § 74). 이 요건은 참조된 조항이 관련 법질서에서 위계 서열이 높거나 이 조항을 언급하는 참조 조항보다 추상성 수준이 더 높은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참조를 명확히 언급하고, 다른 조항을 언급하는 참조 조항에 범죄 구성요소를 명시하는 것이다. 또한, 참조된 조항은 이 조항을 언급하는 참조 조항에 명시된 범죄성립 범위를 확장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ibid.*).

32. 예측가능성 개념의 범위는 문제되는 법문의 내용, 해당 법문에서 다루고자 했던 분야, 해당 법문이 다루고자 하는 대상자의 수와 지위에 따라 상당히 달라진다(*Kononov v. Latvia [GC]*, § 235; *Cantoni v. France*, § 35). 당사자가 문제의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해당 상황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적절한 법률 자문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은 여전히 예측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ibid.*). 이는 직업 활동을 할 때 흔히 높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이는 전문직 종사자에게 특히 해당하는 사항이다. 이 때문에, 전문직 종사자는 전문직 활동에 수반하는 위험을 평가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다(*ibid.*; *Pessino v. France*, § 33; *Kononov v. Latvia [GC]*, § 235; *범죄 정의에서의 “포괄적 참조” 또는 “참조에 의한 입법” 방법의 사용과 범죄행위 당시 시행 중인 형법과 개정된 형법 간의 비교 기준에 관한 권고적 의견 [GC]*; §§ 61 및 68, 직업 정치인 또는 고위 공직자와 관련된 사건). 예를 들어, 재판소는 적절한 법률 조언의 도움을 받은 슈퍼마켓 관리자가 의약품 불법 판매에 대해 기소될 수 있는 실제적 위험이 있었음을 인식했어야 했다고 판결했다(*Cantoni v. France*, § 35). 재판소는 담배갑에 법에 의해 규정되지 않은 문구를 인쇄한 담배 유통회사의 이사(*Delbos and Others v. France (dec.)*), “대중에게 전달되기 전에 확정된” 성명을 통해 공무원의 명예를 공개적으로 훼손한 방송사의 방송 책임자(*Radio France and Others v. France*, § 20), 금지된 첨가물이 함유된 제품을 상업화한 건강보조식품 회사의 관리자(*Ooms v. France (dec.)*), 공공 명예훼손죄의 저자와 발행인(*Chauvy and Others v. France (dec.)*), 저자에게 기소 위험을 경고했어야 하는 발행인의 전문가적 지위를 고려함), 승인 없이 아동 입양 중개자로 활동한 변호사(*Stoica v. France (dec.)*), 가족법 전문 변호사로서의 전문가적 지위를 고려함), 그린란드의 군사방어지역에 불법적으로 진입한 그린피스 활동가들(*Custers, Deveaux and Turk v. Denmark (dec.)*, §§ 95-96), 1971~1989년 사이에 서독과 동독의 국경을 통해 동독 탈출을 시도했던 서독인들에 대한 살인 사건의 주모자로 유죄판결을 받은 동독 국가기구의 고위직 정치인들(*Streletz, Kessler and Krenz v. Germany [GC]*, § 78), 상관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긴 했으나 1972년 서독과

동독의 국경을 건너려고 시도한 사람들을 살해한 동독 국경수비대 대원(*K.-H.W. v. Germany* [GC], §§ 68-81), 제2차 세계대전 중 협력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한 토벌 작전에서 “붉은 파르티잔(Red Partisans)” 부대를 지휘한 소련군 장교(실제적 위험이 있었는지 세심하게 평가되어야 했음)(*Kononov v. Latvia* [GC], §§ 235-239) 등과 같은 개인들의 유죄판결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병사의 개별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병사들이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권, 특히 국제적인 인권 위계 구조에서 최고의 가치를 지닌 생명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명령을 완전히 맹종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ibid.*, § 236; *K.-H.W. v. Germany* [GC], § 75).

33. 예측가능성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기소된 범죄를 범할 당시의 입장에서 (아마도 적절한 법률 자문을 받은 후) 평가되어야 한다(그러나 청구인의 유죄판결 당시, 즉 범죄를 범한 후에 부과된 형벌 범위의 변경에 대한 예측가능성에 관해서는 *Del Río Prada v. Spain* [GC], §§ 112 및 117 참조).

34. 유죄판결이 전적으로 국제법에 기초하거나 국제법의 원칙을 참조하는 경우, 재판소는 사건과 중요한 관련이 있는 기간에 적용되는 국제조약법을 포함한 국제법 기준(동독과 관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Streletz, Kessler and Krenz v. Germany* [GC], §§ 90-106; 독일과 관련된 1948년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Jorgic v. Germany*, § 106) 및/또는 국제관습법에 따라 유죄판결의 예측가능성을 평가한다(1953년의 국제관습법에 따른 집단학살의 정의에 관해서는 *Vasiliauskas v. Lithuania* [GC], §§ 171-175 참조; 1944년의 전쟁법과 전쟁관습법에 관해서는 *Kononov v. Latvia* [GC], §§ 205-227 참조; 그리고 국제분쟁에서 겨자 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관습법에 관해서는 *Van Anraat v. the Netherlands* (dec.), §§ 86-97 참조).

2. 사법적 해석: 법규범의 명료화

35. 법 조항이 아무리 명확하게 작성되었다고 해도 어떤 법체계이든 사법적 해석은 불가피한 요소이다. 법원의 전속 권한인 판결의 역할은 바로 이러한 해석에 관한 의문을 불식하는 것이다(*Kafkaris v. Cyprus* [GC], § 141). 사법적 입법을 통한 형법의 점진적 발전은 협약 당사국들의 법 전통에 명확히 확립된 필수적인 부분이다. 협약 제7조는 새로운 판결이 형사책임 규칙의 점진적 명료화에 해당하고 그것이 범죄의 본질과 일치하며 합리적으로 예측될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개별 사건에서의 사법적 해석을 통해 형사책임 규칙의 점진적 명료화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S.W. v. the United Kingdom*, § 36; *Streletz, Kessler and Krenz v. Germany* [GC], § 50; *Kononov v. Latvia* [GC], § 185; *Norman v. the United Kingdom*, §§ 60 및 66). 재판소는 이 원칙이 국제법뿐만 아니라 국내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결했다(*Milanković v. Croatia*, § 59).

36. 사법적 해석의 예측가능성은 범죄 구성요소(*Pessino v. France*, §§ 35-36; *Dragotoniū and Militaru-Pidhorni v. Romania*, §§ 43-47 및 *Dallas v. the United Kingdom*, §§ 72-77) 및 적용 가능한 형벌(*Alimuçaj v. Albania*, §§ 154-162; *Del Río Prada v. Spain* [GC], §§ 111-117) 모두와 관련이 있다. 유죄판결/범죄의 예측가능성이 없었다는 재판소의 판결은 부과된 형벌이 제7조에서 의미하는 법에 따라 규정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지 않아도 된다(*Plechkov v. Romania*, § 75). 순전히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해석은 범죄의 예측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제7조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Khodorkovskiy and Lebedev v. Russia*, §§ 788-790, 청구인에 대한 기소를 가로막는 절차적 장애물에 관한 사건).

37. 국내의 사법적 해석과 범죄의 본질과의 양립가능성에 관한 문제의 경우, 재판소는 해당 해석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한 해당 형법 조항의 문구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해당 해석이 불합리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여러 판례 중, 집단학살 범죄에 관한 *Jorgic v. Germany*, §§ 104-108 참조). 재판소는 또한 그러한 행위가 단지 규율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서 형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Norman v. the United Kingdom*, § 68).

38. 사법적 해석의 합리적 예측가능성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만약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후, 청구인이 문제의 범죄로 기소되고 유죄판결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점(*Jorgic v. Germany*, §§ 109-113) 및 해당 범죄에 대해 부과되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사건과 중요한 관련이 있는 기간에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는지 평가해야 한다. 재판소는 형법에 대한 사법적 해석이 기존의 인식 가능한 판례법 발전노선을 단순히 따르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S.W. v. the United Kingdom* and *C.R. v. the United Kingdom*, 두 여성의 남편들이 이들 여성에 대해 강간과 강간 미수 범죄를 저지른 것과 관련된 사건으로, 재판소는 강간이 본질적으로 인간의 품위를 훼손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이 너무나 명백하므로 영국 법원의 결정이 예측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협약 목적의 본질은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자유에 대한 존중이다”라는 협약의 기본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사건), 법원에서 청구인이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Pessino v. France*, § 36; *Dragotoniu and Militaru-Pidhorni v. Romania*, § 44; *Del Río Prada v. Spain*, §§ 111-117; 이와 반대로, 청구인들에게 정당한 기대를 불러일으킬 만한 어떠한 판례법도 근거로 제시되지 않은, 이례적인 판결과 관련된 사건으로, 몇 달 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진 *Arrozpide Sarasola and Others v. Spain*, §§ 124-130 참조). 사법적 해석의 예측가능성을 평가할 때, 비교할 만한 판례가 없다는 점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K.A. and A.D. v. Belgium*, §§ 55-58, 재판소가 이례적인 폭력이라고 강조한 가학/피학적 행위로 실제 신체손상을 유발한 것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된 사건; 또한 *Soros v. France*, § 58 참조). 국내 법원이 처음으로 형법 조항을 해석하도록 요청받는 경우, 해당 범죄의 본질과 일치하는 범위 해석은 원칙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Jorgic v. Germany*, § 109, 청구인이 형법 조항에 따라 집단학살로 유죄판결을 받은 첫 번째 사례였던 사건). 기존 범죄의 범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일지라도 국내법의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범죄의 본질과 일치하는 경우 제7조의 목적상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할 것이다(탈세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관한 사건으로 재판소가 조세에 관한 형법에 대해 해당 법이 예측할 수 없게 되지 않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만큼 충분히 유연하다고 판결한 *Khodorkovskiy and Lebedev v. Russia*, §§ 791-821 참조). 어느 경우에도, 국내 법원은 범죄를 예측할 수 있고 범죄의 본질과 양립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범죄 구성요소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Parmak and Bakir v. Turkey*, § 77).

39. 재판소는 특히 사법해석과 일치하는 경우에 사건과 중요한 관련이 있는 시점 당시의 법에 대한 학리해석을 고려할 수 있지만(*K.A. and A.D. v. Belgium*, § 59; *Alimuçaj v. Albania*, §§ 158-160), 작가들이 자유롭게 법령을 해석했다는 사실이 많은 판례법의 존재를 대체할 수는 없다(*Dragotoniu and Militaru-Pidhorni v. Romania*, §§ 26 및 43; *Georgouleas and Nestoras v. Greece*, § 64).

40. 특정 상황에서 특정 유형의 행위가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에도 오랫동안 용인될 경우 특정 사건에서 해당 행위를 사실상 비범죄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을 선고받은 청구인의 형사책임이 면제되거나 청구인의 유죄판결이 제7조의 목적상 예측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Khodorkovskiy and Lebedev v. Russia*, §§ 816-820).

41. 국내 법원이 국제공법에 근거하여 법 조항을 해석하는 경우, 국내법 내에 어느 해석을 채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단, 이는 해당 해석이 범죄의 본질과 일치하며 사건과 중요한 관련이 있는 시점에 합리적으로 예측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예를 들어, 독일 법원에 의해 채택된 집단학살에 대한 광범위한 개념이 이후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다른 국제재판소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Jorgic v. Germany*, §§ 103-116 참조).

42. 재판소는 형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한(*in malam partem*) 사건에서 예측가능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예로는, 해당 해석이 예측할 수 없는 판례법의 반복에서 비롯되었거나(*Dragotoniu and Militaru-Pidhorni v. Romania*, §§ 39-48) 범죄의 본질과 양립할 수 없는 유추에 의한 해석에서 비롯된 경우(예를 들어, 집단학살에 대한 유죄판결, *Vasiliauskas v. Lithuania* [GC], §§ 179-186) 및 너무 광범위하고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이고 해당 범죄의 본질과 양립할 수 없는 범죄 해석인 경우(*Navalnyy v. Russia*, § 68; *Parmak and Bakir v. Turkey*, § 76) 등이 있다. 또한 재판소가 피청구국이 협약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다른 상황의 예로는, 어떤 행위가 이루어질 당시에는 범죄가 아니었으나 이후 통합된 판례법 발전의 결과로 범죄로 확립되었고 이러한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질 경우(예를 들어, 외부에서 마피아 형태의 조직 운영을 방조한 죄, *Contrada v. Italy (no. 3)*, §§ 64-76) 또는 서로 다른 해석이 존재하는 모호한 국내법 조항에 근거하여 유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등이 있다(*Žaja v. Croatia*, §§ 99-106). 이와 관련하여, 일관성이 없는 판례법은 자의성에 관한 모든 위험을 방지하고 개인이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다(*ibid.*, § 103).

43. 배심원단이 사건을 평결하고 형법을 적용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제7조의 목적상 법의 효력을 예측할 수 없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Jobe v. the United Kingdom (dec.)*) 특정 사건에서 배심원단에게 법 적용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자의성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러한 재량권의 범위와 행사 방식이 충분히 명확하게 명시된 경우라면, 배심원단에게 법 적용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사실 자체가 협약 요건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O'Carroll v. the United Kingdom (dec.)*, 음란죄의 구성요소에 대한 배심원의 판단과 관련된 사건).

3. 국가승계에 관한 특별 사례

44. 사법적 해석의 개념은 법치주의에 입각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갖춘 특정 국가의 점진적인 판례법 발전에 적용되지만, 국가승계의 경우에도 똑같이 유효하다. 영토에 대한 국가 주권이 변경되거나 국가 영토상의 정치체제가 변경되는 경우, 재판소는 법치주의에 의해 규율되는 국가가 이전 정권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형사절차를 제기하는 것이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했다. 마찬가지로, 기존 국가를 대체한 국가의 법원이 법치주의에 의해 규율되는 국가에 적용되는 원칙에 비추어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시점에 발효 중이었던 법 조항을 적용하고 해석한 것을 비판할 수는 없다(*Streletz, Kessler and Krenz v. Germany* [GC], §§ 79-83; *Vasiliauskas v. Lithuania* [GC], § 159). 이는 사건의 쟁점이 협약과 국제적인 인권 위계 구조에서 최고의 가치를 지녔으며 협약에 따라 체약국이 일차적인 보호 의무를 지는 생명권에 관한 문제인 경우에 특히 해당한다(*Kononov v. Latvia* [GC], § 241). 국내법 또는 국제법 문서에 따라 형사 범죄로 간주되는 특정 행위를 용인하거나 장려하는 국가 관행 및 이러한 관행이 해당 행위의 가해자에게 심어주는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정의 실현과 처벌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지 못한다(*Vasiliauskas v. Lithuania* [GC], § 158; *Streletz, Kessler and Krenz v. Germany* [GC], §§ 74 및 77-79). 따라서 재판소는 독일 통일 후 서독 법원이 1971~1989년 사이에 동독 탈출을 시도했던 서독인들을 살해한 동독의 정치 지도자와 국경수비대 대원에 대해 동독 법령에 근거하여 내린 유죄판결이 예상될 수 있었다고 판결했다(*ibid.*, §§ 77-89; *K.-H.W. v. Germany* [GC], §§ 68-91). 재판소는 1990년과 1991년의 라트비아의 선언 독립 후 라트비아 법원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전쟁범죄를 저지른 소련군 지휘관에 대해 선고한 유죄판결의 경우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Kononov v. Latvia* [GC], §§

240-241).

45. 재판소는 또한 사건과 중요한 관련이 있는 기간에 리투아니아가 아직 독립국으로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을 회복한 리투아니아 공화국 법령에 근거한 유죄판결이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으며, 따라서 협약 제7조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Kuolelis, Bartosevicius and Burokevicius v. Lithuania*, §§ 116-122, 1991년 1월 전복 및 반국가 활동에 관여한 소련 공산당 리투아니아 지부 지도자들에 대한 유죄판결과 관련된 사건).

4. 국가의 보편적 형사관할권과 관련 국내 법령에 관한 특별 사례

46. 특정 국가의 국내법에 근거하여 해당국의 국내 법원이 내린 유죄판결이 다른 국가의 당사자가 저지른 행위와 관련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Jorgic v. Germany*; *Van Anraat v. the Netherlands* (dec.)). 국내 법원의 역외 관할권 또는 보편적 관할권 문제는 제7조의 범위에 속하는 문제가 아니라(*Ould Dah v. France* (dec.)) 협약 제6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제(a)호에 명시된 법에 따라 설립된 재판소 또는 법원에 대한 권리의 범위에 속하는 문제이다(“관할법원의 유죄판결 후 합법적인 구금”)(*Jorgic v. Germany*, §§ 64-72,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 자행된 집단학살 행위에 대한 유죄판결과 관련된 사건).

47. 하지만, 국가의 국내 법원이 보편적 형사관할권에 속한 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릴 때 해당 행위가 행해진 국가의 법에 반하는 방식으로 국내법을 적용할 경우 제7조에 따른 심사가 수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리타니에서 자행된 고문과 잔혹한 행위에 대해 프랑스 법원이 (UN 고문방지협약에 근거하여) 모리타니 장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형사절차가 시작되기 전 제정된) 모리타니 사면법에 반하는 방식의 프랑스 형법의 적용은 적법성 원칙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Ould Dah v. France* (dec.)).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국가들이 재판관할권만을 행사할 수 있고 자국의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면, 고문을 금지하고 해당 보편적 원칙을 위반한 자를 기소하며 서명국이 고문방지협약에 규정된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할 절대적 필요성은 그 본질을 잃을 것이다.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또는 해당하는 경우 범죄 가해자가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범죄가 행해진 장소의 국가에 의해 통과된 결정이나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의 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간주될 경우, 이는 보편적 관할권 행사를 마비시키고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의해 추구되는 목적을 좌절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고문방지협약이 인권 보호와 관련된 모든 국제 문서 중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주사회의 기본 가치 중 하나를 담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IV. 형법 불소급원칙

A. 일반 고려사항

48. 제7조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형법의 소급 적용을 무조건적으로 금지한다(*Del Río Prada v. Spain* [GC], § 116; *Kokkinakis v. Greece*, § 52). 형법 불소급원칙은 범죄를 정의하는 조항(*Vasiliauskas v. Lithuania* [GC], §§ 165-166) 및 부과되는 형벌을 정하는 조항(*Jamil v. France*, §§ 34-36; *M. v. Germany*, §§ 123 및 135-137; *Gurguchiani v. Spain*, §§ 32-44) 모두에 적용된다. 형이 확정된 후 또는 복역 중에도 형벌 소급 금지 원칙에 따라 입법부, 행정기관, 법원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부과된 형벌의 범위를 재정의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Del Río Prada v. Spain* [GC], § 89, 판례법 변경에 따라 구금 중의 노역에 대한 감형이 징역 30년형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게 되었으나, 청구인이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는 법정 징역형이 새로운 별개의 형으로 간주되었으므로 구금 중의 노역에 대한 감형이 적용되었어야 했던 사건).

49. 법령 조항이 발효되기 전에 행하여진 범죄에 대해 법령 조항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불소급원칙에 반한다. 기존 범죄의 범위를 이전에 형사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에 대해 확장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나 문제의 행위가 독립적인 범죄가 아닌 가중사유로만 처벌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사건과 중요한 관련이 있는 시점에 적용 가능한 형법에 따라 이미 처벌될 수 있었던 경우(*Ould Dah v. France* (dec.)), 단 부과된 형벌이 해당 형법에 규정된 최대치를 초과할 수 없음) 또는 청구인의 유죄판결이 중요한 시점에 적용되는 국제법에 근거한 경우 제7조 위반이 발생하지 않는다(*Vasiliauskas v. Lithuania* [GC], §§ 165-166, 재판소가 1953년 시행 중인 국제법에 비추어 청구인의 유죄판결을 검토했으며, 집단학살에 관한 2003년 리투아니아 법령 조항이 소급 적용되었다고 언급한 사건; *Šimšić v. Bosnia and Herzegovina* (dec.)), 1992년 자행된 인도에 반한 죄에 관한 사건; *Milanković v. Croatia*, § 53, 재판소가 1991년과 1992년에 자행된 청구인의 전쟁범죄에 대해 청구인의 지휘 책임을 근거하여 내려진 유죄판결을 검토한 사건). 후자의 경우, 국내 기관은 국제법에 명시된 것보다 언제나 더 광범위한 범죄 정의를 채택할 수 있지만(위 § 40) 이전에 행하여진 행위에 대한 새로운 정의에 기초하여 소급 적용되는 형을 부과할 수는 없다(*Vasiliauskas v. Lithuania* [GC], § 181, 1953년 정치집단 구성원들을 상대로 자행된 행위에 대해 2003년 형법을 근거로 선고된 집단학살죄와 관련된 사건).

50. 제7조의 목적상, 혐의가 제기된 범죄 행위 이후 통과된 법률이 해당 범죄 행위 시 시행되었던 법률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추상적으로 범죄의 정의를 비교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구체화 원칙). 추후 제정된 법이 혐의가 제기된 범죄 행위 당시 시행되었던 법보다 더 엄격한 경우 추후 제정된 법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범죄 정의에서의 “포괄적 참조” 또는 “참조에 의한 입법” 방법의 사용과 범죄행위 당시 시행 중인 형법과 개정된 형법 간의 비교 기준에 관한 권고적 의견*, [GC], §§ 88 및 92).

51. 형벌의 강도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범죄 행위 시 적용되었던 것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않음을 스스로 납득하는 것에 국한해야 한다. 벌칙의 적절성과 관련된 문제들은 협약 제7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징역형 형기나 문제의 범죄에 적합한 형벌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은 재판소의 역할이 아니다(*Hummatov v. Azerbaijan* (dec.); *Hakkar v. France* (dec.); *Vinter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 105). 그러나 형벌의 비례성과 관련된 문제는 협약 제3조(“명백히 불균형한 형벌”의 개념에 관해, 제102조)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52. 형벌의 강도/중함에 관하여, 예를 들어 재판소는 범죄가 행해질 당시 사형이 부과될 수 있었으나 이후 폐지되고 종신형으로 대체된 사건에서 종신형이 사형보다 무겁지 않다고 판결했다(*Hummatov v. Azerbaijan* (dec.); *Stepanenko and Ososkalo v. Ukraine* (dec.); *Öcalan v. Turkey* (no. 2), § 177; *Ruban v. Ukraine*, § 46). 재판소는 또한 재심이 시작된 후 새로 개정된 형법에 따라 징역형에서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감호형으로 대체된 사건에서 더 무거운 형벌이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국내 법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건과 중요한 관련이 있는 시점에 적용될 수 있었던 구 형법에는 이미 새로 개정된 형법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강도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었다(*Kadusic v. Switzerland*, §§ 71-76; 반대로, 재판소가 재심 절차에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예방적 구금이 소급하여 부과된 더 무거운 형벌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W.A. v. Switzerland**, §§ 58-60 참조).

53. 형벌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소급 적용되었는지 판단할 때, 각 형법에 따라 적용되는 양형제도(최소형량과 최대형량)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적용 가능한 두 형법의 범위 내에서 청구인에게 형량이 부과되었을지라도, 두 형법 중 하나에 따른 더 가벼운 최소형량이 적용되었을 경우 더 가벼운 형량이 부과될 수 있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제7조 위반 판결을 내리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Maktouf and Damjanović v. Bosnia and Herzegovina* [GC], §§ 65-76). 문제의 형법이 피고인에게 더 관대하거나 유리한지에 대한 평가는 문제의 두 형법의 추상적인 비교를 통해 결정되지 않는다. 결정적인 것은 특정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수행한 후, 다른 형법 대신 해당 형법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양형에서 불이익을 받았는지 여부이다(*ibid.*, §§ 69-70; *Jidic v. Romania*, §§ 85-98).

B. 계속범

54. “계속하는 범죄” 또는 “계속범”(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는 행위에 관한 범죄)의 경우, 재판소는 법적 확실성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형사책임을 발생시키는 범죄 구성요소를 공소장에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법원의 판결 역시 피고인의 유죄판결과 형량이 “계속범”의 구성요소가 검찰에 의해 성립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선고되었음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Ecer and Zeyrek v. Turkey*, § 33). 재판소는 형법 개혁 시행 전 행해진 행위 등과 관련된 조항의 개정을 포함하는 형법 개혁으로 도입되었고 국내법상 “계속범”으로 분류된 범죄에 대한 국내 법원의 유죄판결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형법의 소급 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Rohlana v. the Czech Republic* [GC], §§ 57-64, 같은 집에 사는 거주자에 대한 학대죄와 관련된 사건). 재판소는 해당 국내법에 따라 “계속범”은 단일 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구법에 따라 행해진 행위도 이 구법 이전에 시행 중이던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해당 행위의 형법상 분류에 대한 평가가 마지막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에 시행 중인 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첫 번째 범죄를 범하기 전에 형법에 도입된 계속범 개념이 국내 법원에 의해 적용될 것이라는 점은 국내법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예측될 수 있었다(*ibid.*, §§ 60-64). 재판소는 또한 “계속범” 분류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형벌이 입법 개혁 전에 청구인이 범한 행위를 입법 개혁이 시행된 후 청구인이 범한 행위와 따로 떼어 놓고 독립적으로 검토할 경우 부과되었을 형벌보다 무겁지 않았음을 확인했다(*ibid.*, §§ 65-69).

55. 반대로, 계속범에 대한 유죄판결이 사건과 중요한 관련이 있는 시기에 적용되는 국내법상 예측될 수 없었고 청구인에게 더 무거운 형량이 부과되는 결과를 가져온 경우, 재판소는 해당 형법이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소급 적용되었다고 판결했다(*Veeber v. Estonia (no. 2)*, §§ 30-39; *Puhk v. Estonia*, §§ 24-34).

C. 재범

56. 재판소는 청구인이 기소되고 처벌된 범죄가 재범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새로운 법률이 발효된 후 발생한 점을 확인한 후, 1984년 유죄판결이 청구인의 전과기록에 유지되었고, 이 때문에 이후 사실심 법원과 항소법원이 청구인의 과거 범죄 전과를 고려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제7조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Achour v. France* [GC], §§ 44-61, 어떤 범죄를 다시 범했을 때 재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한 새로운 형법의 즉각적인 적용에 관한 사건으로, 첫 번째 범죄가 행해진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구법은 재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해당 5년 기간 만료 시 “잊힐 권리”의 혜택을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한 사건). 이러한 소급 접근법은 엄밀히 말해 형벌의 불소급원칙 개념과 구별된다.

V. 더 유리한 형법의 소급 적용 원칙

57.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15조제1항의 마지막 문장 및 미주인권협약 제9조와 달리) 협약 제7조제1항이 더 약한 처벌의 소급원칙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소는 제7조제1항이 더 엄격한 형법의 불소급원칙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더 관대한 형법의 소급원칙도 보장한다고 판결했다. 이 원칙은 범죄 행위 시 시행되고 있었던 형법과 종국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제정된 후속 형법이 다른 경우, 법원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칙에 구현되어 있다(*Scoppola v. Italy (no. 2)* [GC], §§ 103-109, 종신형 대신 30년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된 사건). 재판소는 “범죄 행위 시 규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유일한 이유로 더 무거운 형벌을 가할 경우 결국 형법 승계를 규율하는 규칙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처럼 더 무거운 형벌을 가하는 것은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어떠한 법 개정도 무시하고, 국가 및 국가에 의해 대표되는 공동체가 이제 과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형벌을 계속 부과하게 될 것이다”라고 판단했다(*ibid.*, § 108). 재판소는 심지어 범죄가 행해진 후 제정된 형법인 경우에도 더 관대한 형벌을 규정한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형법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는 견해에 대해 유럽과 전 세계에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ibid.*, § 106). 그 밖에도, 재판소는 더 관대한 형법의 소급 적용 원칙이 적용 가능한 형벌뿐만 아니라 범죄의 정의에 관한 개정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판결했다(*Parmak and Bakir v. Turkey*, § 64; *범죄 정의에서의 “포괄적 참조” 또는 “참조에 의한 입법” 방법의 사용과 범죄행위 당시 시행 중인 형법과 개정된 형법 간의 비교 기준에 관한 권고적 의견*, [GC], § 82).

58. 하지만, 사형 폐지와 그에 따른 형법 개정(사형을 종신형으로 대체) 사이의 3개월의 입법 공백은 청구인에게 형법 개정 이후 적용된 더 관대한 처벌을 받을 권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Ruban v. Ukraine*, §§ 41-46, 15년 징역형과 관련된 사건).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소는 해당 국가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된 배경, 특히 문제의 입법 공백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고려했다(*ibid.*, § 45).

59. *Scoppola v. Italy (no. 2)* [GC] 사건에서, 재판소가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유리한 법 개정의 소급 효과에 대해 명시적으로 찬성하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후속 법령에서 범죄에 대한 형벌을 감경한 경우 국내법에 따라 국내 법원이 직권으로 형량 선고를 검토하도록 요구되는 한 재판소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 더 가벼운 형벌의 소급원칙을 적용했다(*Gouarré Patte v. Andorra*, §§ 28-36). 재판소는 국가 법령에 더 유리한 형벌의 소급원칙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 해당 국가는 협약의 보장에 따라 자국 시민들이 이 권리를 행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ibid.*, § 35; 법이 개정된 후 청구인이 자신의 형량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절차가 국내 법원의 결론을 고려할 때, 제7조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 *Artsruni v. Armenia* (dec.), §§ 47-62 비교 및 대조).

60. 더 관대한 형벌의 소급원칙은 여러 형량을 하나의 형량으로 병합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Koprivnikar v. Slovenia*, § 59).

61.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가 행해진 후 통과된 법률이 해당 범죄 행위 당시 시행되었던 법률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 즉 구체화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범죄 정의에서의 “포괄적 참조” 또는 “참조에 의한 입법” 방법의 사용과 범죄행위 당시 시행 중인 형법과 개정된 형법 간의 비교 기준에 관한 권고적 의견, [GC], §§ 86-92).

VI. 제7조제2항: 문명국가에 의하여 승인된 법의 일반원칙

협약 제7조제2항

“2. 이 조는 그 행위 시 문명국가에 의하여 승인된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범죄에 해당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당해인을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HUDOC 키워드

형사 범죄 (7-2) - 문명국가에 의하여 승인된 법의 일반원칙 (7-2)

62. 조항은 준비문서(*travaux préparatoires*)에서 협약으로 이어진 것으로, 제7조제1항은 일반적인 불소급원칙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제7조제2항은 이 원칙의 책임 부분에 대한 맥락적 설명일 뿐이며, 제2차 세계대전 중 자행된 범죄에 대해 전후에도 기소의 타당성을 명확히 보장하기 위해 포함된 조항이다(*Kononov v. Latvia* [GC], § 186; *Maktouf and Damjanović v. Bosnia and Herzegovina* [GC], § 72). 이 점을 고려할 때, 협약 작성자들이 불소급원칙에 대한 일반적인 예외를 허용할 의도가 없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실제로, 재판소는 여러 사건에서 제7조의 두 조항이 상호 연결되어 있고 일치된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Tess v. Latvia* (dec.); *Kononov v. Latvia* [GC], § 186).

63.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재판소는 1992년과 1993년 보스니아에서 자행된 전쟁범죄에 대한 유죄판결(*Maktouf and Damjanović v. Bosnia and Herzegovina* [GC], §§ 72,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부는 문제의 행위가 “문명국가에 의하여 승인된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범죄에 해당했으며, 형벌 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및 1953년에 자행된 집단학살에 대한 유죄판결 (*Vasiliauskas v. Lithuania* [GC], §§ 187-190)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자행된 전쟁범죄의 유죄판결에 대해, 재판소는 청구인의 행위가 제7조제1항에서 의미하는 “국제법”에 따른 범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제7조제2항에 따라 평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Kononov v. Latvia* [GC], §§ 244-246, 국제관습법, 특히 전쟁법과 전쟁 관습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됨).

VII. 협약 제7조 위반 사건에서 재판소가 제시한 조치

64. 협약 제46조에 따라 체약국은 자신이 당사자인 모든 사건에서 재판소의 종국판결을 따르고 각료회의의 감독하에 집행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 또는 의정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피청구국은 정당한 보상 금액을 관련자에게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협약 제41조), 각료회의의 감독을 받아 재판소에서 확인된 위반을 중단하고 해당 영향을 최대한 시정하기 위해 해당국 국내법 질서에 도입된 일반 조치 및/또는 적절한 경우 개별 조치를 선택해야 한다. 그 밖에도, 피청구국은 재판소의 판결에 명시된 결론과 양립할 수 있는 경우인 한, 협약 제46조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Scozzari and Giunta v. Italy* [GC], § 249).

65. 하지만, 일부 특정 상황에서, 재판소는 피청구국이 제4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위반이 확인된 상황을 중단시키기 위해 시행할 수 있는 개별 조치 및/또는 일반 조치의 유형을 특정해서 밝히는 경우도 있다. 제7조 위반이 확인된 경우, 재판소는 예외적으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국내 절차를 재개하는 실질적인 개별 조치를 특정하거나(*Dragotoniū and Militaru-Pidhorni v. Romania*, § 55, 개인이 협약 제6조를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와 동일한 원칙이 적용됨), 가능한 신속히 청구인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거나(*Del Río Prada v. Spain* [GC], § 139 및 주문 제3항, 협약 제7조 및 제5조제1항의 위반이 확인됨), 더 가벼운 형벌의 소급원칙에 따라 피청구국에 청구인의 종신형을 3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Scoppola v. Italy (no. 2)* [GC], § 154 및 주문 제6(a)항).

인용 판례 목록

이 해설서에 인용된 판례는 재판소가 내린 판결 또는 결정과 유럽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결정 또는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은 경우, 모든 참조는 유럽인권재판소 재판부가 본안에 대해 내린 판결에 대한 것입니다. 약칭 "(dec.)"은 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GC]"는 해당 사건이 대재판부에서 심리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소재판부의 판단 중 이 개정판 발간 당시 협약 제44조에서 의미하는 최종확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래 목록에 별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협약 제44조제2항에는 "(a) 당사자가 사건을 대재판부 회부를 요청하지 않기로 선언하는 경우, (b) 당사자가 대재판부 회부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또는 (c) 대재판부의 패널(panel)이 제43조에 따른 회부 요청을 거부한 경우 소재판부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재판부의 패널이 회부 요청을 수락한 경우, 소재판부의 판단이 아니라 이후 대재판부의 판단이 최종판단이 됩니다.

이 해설서의 전자판에 인용된 사건의 하이퍼링크는 재판소 판례(대재판부, 소재판부 및 위원회의 판결과 결정, 언급된 사건, 권고적 의견 및 판례정보노트(Case-Law Information Note)의 결정요지(legal summary), 위원회의 판례(결정 및 보고서), 그리고 각료위원회 결의에 접속할 수 있는 HUDOC 데이터베이스(<http://hudoc.echr.coe.int>)로 연결합니다.

재판소는 두 공식 언어인 영어나 프랑스어 중 하나 또는 두 언어 모두로 판결과 결정을 내립니다. HUDOC는 또한 30개 이상의 비공식 언어로 번역된 많은 주요 판례의 번역본과 제3자가 작성한 약 100개의 온라인 판례집에 대한 연결을 제공합니다. 인용 사례에 사용할 수 있는 인용된 사건에 대한 번역본들은 해당 사건의 하이퍼링크를 클릭한 후 연결되는 HUDOC 데이터베이스에서 '번역본(Language versions)' 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A—

A. v. Spain, no. 11885/85, Commission decision of 13 October 1986

Achour v. France [GC], no. 67335/01, ECHR 2006-IV

Adamson v. the United Kingdom (dec.), no. 42293/98, 26 January 1999

Advisory opinion concerning the use of the "blanket reference" or "legislation by reference" technique in the definition of an offence and the standards of comparison between the criminal law in force at the time of the commission of the offence and the amended criminal law [GC], request no. P16-2019-001, 29 May 2020

Advisory opinion on the applicability of statutes of limitation to prosecution, conviction and punishment in respect of an offence constituting, in substance, an act of torture [GC], request no. P16-2021-001, 26 April 2022

Alimuçaj v. Albania, no. 20134/05, 7 February 2012

Antia and Khupenia v. Georgia, no. 7523/10, 18 June 2020

Arrozpide Sarasola and Others v. Spain, nos. 65101/16 and 2 others, 23 October 2018

Artsruni v. Armenia (dec.), no. 41126/13, 30 November 2021

—B—

Balsamo v. San Marino, nos. 20319/17 and 21414/17, 8 October 2019
Başkaya and Okçuoğlu v. Turkey [GC], nos. 23536/94 and 24408/94, ECHR 1999-IV
Bergmann v. Germany, no. 23279/14, 7 January 2016
Berland v. France, no. 42875/10, 3 September 2015
Borcea v. Romania (dec.), no. 55959/14, 22 September 2015
Bosti v. Italy (dec.), no. 43952/09, 13 November 2014
Bowler International Unit v. France, no. 1946/06, 23 July 2009
Brown v. the United Kingdom (dec.), no. 38644/97, 24 November 1998

—C—

C.G. and Others v. Bulgaria (dec.), no. 1365/07, 13 March 2007
C.R. v. the United Kingdom, 22 November 1995, Series A no. 335-C
Camilleri v. Malta, no. 42931/10, 22 January 2013
Cantoni v. France, 15 November 1996,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6-V
Çelikateş and Others v. Turkey (dec.), no. 45824/99, 7 November 2000
Chauvy and Others v. France (dec.), no. 64915/01, 23 September 2003
Ciok v. Poland (dec.), no. 498/10, 23 October 2012
Coëme and Others v. Belgium, nos. 32492/96 and 4 others, ECHR 2000-VII
Contrada v. Italy (no. 3), no. 66655/13, 14 April 2015
Custers, Deveaux and Turk v. Denmark (dec.), nos. 11843/03 and 2 others, 9 May 2006

—D—

Dallas v. the United Kingdom, no. 38395/12, 11 February 2016
Del Río Prada v. Spain [GC], no. 42750/09, ECHR 2013
Delbos and Others v. France (dec.), no. 60819/00, ECHR 2004-IX
Dragotoni and Militaru-Pidhorni v. Romania, nos. 77193/01 and 77196/01, 24 May 2007

—E—

Ecer and Zeyrek v. Turkey, nos. 29295/95 and 29363/95, ECHR 2001-II
Engel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8 June 1976, Series A no. 22

—G—

G. v. France, 27 September 1995, Series A no. 325-B
G.I.E.M. S.R.L. and Others v. Italy (merits) [GC], nos. 1828/06 and 2 others, 28 June 2018
Gabbari Moreno v. Spain, no. 68066/01, 22 July 2003
Galan v. Italy (dec.), no. 63772/16, 18 May 2021
Gardel v. France, no. 16428/05, ECHR 2009
Georgouleas and Nestoras v. Greece, nos. 44612/13 and 45831/13, 28 May 2020
Gestur Jónsson and Ragnar Halldór Hall v. Iceland [GC], nos. 68273/14 and 68271/14, 22 December 2020
Giza v. Poland, no. 48242/06, 13 July 2010
Glien v. Germany, no. 7345/12, 28 November 2013

Göktan v. France, no. 33402/96, ECHR 2002-V
Gouarré Patte v. Andorra, no. 33427/10, 12 January 2016
Grava v. Italy, no. 43522/98, 10 July 2003
Gurguchiani v. Spain, no. 16012/06, 15 December 2009

—H—

Haïoun v. France (dec.), no. 70749/01, 7 September 2004
Hakkar v. France (dec.), no. 43580/04, 7 April 2009
Hogben v. the United Kingdom, no. 11653/85, Commission decision of 3 March 1986,
Decisions and Reports 46
Hummatov v. Azerbaijan (dec.), nos. 9852/03 and 13413/04, 18 May 2006

—I—

Ilmseher v. Germany [GC], nos. 10211/12 and 27505/14, 4 December 2018

—J—

Jamil v. France, 8 June 1995, Series A no. 317-B
Jendrowiak v. Germany, no. 30060/04, 14 April 2011
Jidic v. Romania, no. 45776/16, 18 February 2020
Jobe v. the United Kingdom (dec.), no. 48278/09, 14 June 2011
Jorgic v. Germany, no. 74613/01, ECHR 2007-III
Jussila v. Finland [GC], no. 73053/01, ECHR 2006-XIV

—K—

K.-H.W. v. Germany [GC], no. 37201/97, ECHR 2001-II
K.A. and A.D. v. Belgium, nos. 42758/98 and 45558/99, 17 February 2005
Kafkaris v. Cyprus [GC], no. 21906/04, ECHR 2008
Kadusic v. Switzerland, no. 43977/13, 9 January 2018
Khodorkovskiy and Lebedev v. Russia, nos. 11082/06 and 13772/05, 25 July 2013
Kokkinakis v. Greece, 25 May 1993, Series A no. 260-A
Kolk and Kislyiy v. Estonia (dec.), nos. 23052/04 and 24018/04, 17 January 2006
Kononov v. Latvia [GC], no. 36376/04, ECHR 2010
Koprivnikar v. Slovenia, no. 67503/13, 24 January 2017
Korbely v. Hungary [GC], no. 9174/02, ECHR 2008
Kuolelis, Bartosevicius and Burokevicius v. Lithuania, nos. 74357/01 and 2 others, 19
February 2008

—L—

Lawless v. Ireland (no 3), 1 July 1961, Series A no. 3
Liivik v. Estonia, no. 12157/05, 25 June 2009
Lukanov v. Bulgaria, no. 21915/93, Commission decision of 12 January 1995, Decisions and
Reports 80

—M—

M. v. Germany, no. 19359/04, ECHR 2009
M. v. Italy, no. 12386/86, Commission decision of 15 April 1991, Decisions and Reports 70
Maaouia v. France [GC], no. 39652/98, ECHR 2000-X
Maktouf and Damjanović v. Bosnia and Herzegovina [GC], nos. 2312/08 and 34179/08, ECHR 2013
Milanković v. Croatia, no. 33351/20, 20 January 2022
Monaco v. Italy (dec.), no. 34376/13, 8 December 2015
Montcornet de Caumont v. France (dec.), no. 59290/00, ECHR 2003-VII
Morabito v. Italy (dec.), no. 58572/00, 7 June 2005
Mucci v. Italy, no. 33632/96, Commission decision of 4 March 1998

—N—

Navalnyye v. Russia, no. 101/15, 17 October 2017
Norman v. the United Kingdom, no. 41387/17, 6 July 2021

—O—

O’Carroll v. the United Kingdom, no. 35557/03, 15 March 2005
Öcalan v. Turkey (no. 2), no. 19681/92, 5 June 2001
Ooms v. France (dec.), no. 38126/06, 25 September 2009
Orlen Lietuva Ltd. v. Lithuania, no. 45849/13, 29 January 2019
Ould Dah v. France (dec.), no. 13113/03, ECHR 2009

—P—

Paksas v. Lithuania [GC], no. 34932/04, ECHR 2011
Pantalon v. Croatia, no. 2953/14, 19 November 2020
Parmak and Bakır v. Turkey, nos. 22429/07 and 25195/07, 3 December 2019
Payet v. France, no. 19606/08, 20 January 2011
Penart v. Estonia (dec.), no. 14685/04, 24 January 2016
Perinçek v. Switzerland [GC], no. 27510/08, ECHR 2015
Pessino v. France, no. 40403/02, 10 October 2006
Platini v. Switzerland (dec.), no. 526/18, 11 February 2020
Plechkov v. Romania, no. 1660/03, 16 September 2014
Polednová v. the Czech Republic, no. 2615/10, 21 June 2011
Porsenna v. Malta (dec.), no. 1109/16, 22 January 2019
Previti v. Italy (dec.), no. 1845/08, 12 February 2013
Puhk v. Estonia, no. 55103/00, 10 February 2004

—R—

Radio France and Others v. France, no. 53984/00, ECHR 2004-II
Raimondo v. Italy, 22 February 1994, Series A no. 281-A
Renna v. France, no. 32809/96, Commission decision of 26 February 1997
Rohlena v. the Czech Republic [GC], no. 59552/08, ECHR 2015
Rola v. Slovenia, nos. 12096/14 and 39335/16, 4 June 2019

Ruban v. Ukraine, no. 8927/11, 12 July 2016

—S—

S.W. v. the United Kingdom, 22 November 1995, Series A no. 335-B
Sergueï Zolotukhin v. Russia [GC], no. 14939/03, ECHR 2009
Scoppola v. Italy (no. 2) [GC], no. 10249/03, 17 September 2009
Scozzari and Giunta v. Italy [GC], nos. 39221/98 and 41963/98, ECHR 2000-VIII
Sidabras and Džiautas v. Lithuania (dec.), nos. 55480/00 and 59330/00, 1 July 2003
Šimšić v. Bosnia and Herzegovina (dec.), no. 51552/10, 10 April 2012
Sobacı v. Turkey, no. 26733/02, 29 November 2007
Société Oxygène Plus v. France (dec.), no. 76959/11, 17 May 2016
Soros v. France, no. 50425/06, 6 October 2011
Stepanenko and Ososkalo v. Ukraine (dec.), nos. 31430/09 and 29104/11, 14 January 2014
Stoica v. France (dec.), no. 46535/08, 20 April 2010
Streletz, Kessler and Krenz v. Germany [GC], nos. 34044/96 and 2 others, ECHR 2001-II
Sud Fondi srl and Others v. Italy (dec.), no. 75909/01, 30 August 2007
Sud Fondi srl and Others v. Italy, no. 75909/01, 20 January 2009
Szabó v. Sweden (dec.), no. 28578/03, ECHR 2006-VIII

—T—

Tess v. Latvia (dec.), no. 19363/05, 4 January 2008
Timofeyev and Postupkin v. Russia, nos. 45431/14 and 22769/15, 19 January 2021

—U—

Ulemek v. Serbia (dec.), no. 41680/13, 2 February 2021
Uttley v. the United Kingdom (dec.), no. 36946/03, 29 November 2005

—V—

Valico SLR v. Italy (dec.), no. 70074/01, 21 March 2006
Van Anraat v. the Netherlands (dec.), no. 65389/09, 6 July 2006
Van der Velden v. the Netherlands (dec.), no. 29514/05, ECHR 2006-XV
Varvara v. Italy, no. 17475/09, 29 October 2013
Vasiliauskas v. Lithuania [GC], no. 35343/05, ECHR 2015
Veeber v. Estonia (no. 2), no. 45771/99, ECHR 2003-I
Vikulov and Others v. Latvia (dec.), no. 16870/03, 23 March 2004
Vinter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nos. 66069/09 and 2 others, ECHR 2013

—W—

W.A. v. Switzerland, no. 38958/16, 2 November 2021
Welch v. the United Kingdom, 9 February 1995, Series A no. 307-A

—X—

X v. the Netherlands, no. 7512/76, Commission decision of 6 July 1976, Decisions and Reports 6

—Y—

Yildirim v. Italy (dec.), no. 38602/02, ECHR 2003-IV

—Z—

Žaja v. Croatia, no. 37462/09, 4 October 2016